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3.31.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EU에서의 섬유제품 CE 마킹 해당 여부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 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U : Textiles Ecosystem

유럽에서는 TCLF(섬유, 의류, 가죽, 신발) 관련 산업을 Textiles Ecosystem이라 지칭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군은 CE 마킹 대상이 아닙니다.

섬유제품의 CE마킹

유럽에서는 TCLF(섬유, 의류, 가죽, 신발 : Textiles, clothing, leather and footwear) 관련 산업을 Textiles Ecosystem이라 지칭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군은 CE 마킹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섬유제품이 개인보호장비(PPE), 의료기기, 장난감 등 CE 마킹 대상의 타 제품군에 속할 때 CE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CE marking

Textile products and footwear **do not have to be CE marked** according to the Textile Labelling Regulation (EU) 1007/2001 or the Footwear Directive 94/11/EC respectively.

However, if textile products or other products of the textile ecosystem, including footwear, fall in scope of legislation requiring CE marking, they have to be CE mark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in question - this is not ably the case for certain TCLF technical products such a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medical devices and toys**. **Construction products** are subject to particular rules on CE marking. **Biocidal products** are, on the other hand, subject to particular rules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섬유 제품과 신발은 각각 섬유 라벨링 규정(EU) 1007/2001 또는 신발 지침 94/11/EC에 따라 **CE 마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포함한 섬유 제품 또는 textile ecosystem의 다른 제품이 CE 마크를 요구하는 법률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조항에 따라 CE 마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특히 **개인 보호 장비, 의료 기기 및 장난감**과 같은 특정 TCLF 기술 제품의 경우입니다. **건설 제품**은 CE 마크에 대한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Biocidal 제품**은 분류, 라벨 및 포장에 대한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 유럽위원회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textiles-ecosystem_en

8.6 Does the Textile Regulation require CE marking of textile products?

The Textile Regulation does not require CE marking of textile products. However, certain types of products which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textile products, as referred to in Article3(1)(a) of the Textile Regulation, **are required to bear CE marking by other EU legislation**, such a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EU) 2016/425, medical devices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 (EU)2017/745 and toy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oy Safety Directive2009/48/EC. Construction products that are concurrently textile products, such as geotextiles, are subject to particular rules on CE mark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305/2011.

8.6 섬유 규정은 섬유 제품의 CE 마크를 요구합니까?

섬유 규정은 섬유 제품의 CE 마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유 규정의 제3조(1)항(a)에 언급된 섬유 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특정 유형의 제품은 개인 보호 규정(EU) 2016/425에 따른 개인 보호 장비, 의료 기기 규정(EU) 2017/745에 따른 의료 기기, 장난감 안전 지침 2009/48/EC의 조항에 따른 장난감과 같이 **다른 EU 법률에 따라 CE 마크를 받아야 합니다.** geotextile과 같이 섬유 제품이기도 한 건설 제품은 건설 제품 규정(EU) 305/2011에 따라 CE 마크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출처 : Europa.eu : revised FAQs on Regulation (EU) No 1007/2011 (2024-01-31)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document/download/34cf863-59ef-4352-8489-a2577102d48f_en?filename=revised%20FAQs%20on%20Regulation%201007-2011%20-%20published.pdf

관련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및 아래의 pdf 문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 Textiles Ecosystem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textiles-ecosystem_en

▶ European Union : revised FAQs on Regulation (EU) No 1007/2011 (2024-01-31)

pdf 파일 : p.13의 8.6 참조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document/download/34cf863-59ef-4352-8489-a2577102d48f_en?filename=revised%20FAQs%20on%20Regulation%201007-2011%20-%20published.pdf

CE 마킹 대신에 아래 **라벨링 규정**을 통해 판매자가 정확한 섬유 명칭, 구성 등을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안전하게 판매되도록 합니다. 규정 원문에서 적용 대상 제품, 라벨링 방법, 시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 > 섬유/의류 관련규제 (Textiles and clothing legislation)

https://ec.europa.eu/growth/sectors/fashion/textiles-clothing/legislation_en

- The Textile Labelling Regulation (EU) 1007/2011

: 규정 원문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1R1007-20180215>

▶ 섬유 라벨링 (Labelling of textiles)

Article 4

General requirement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textile products

Textile products shall only be made available on the market provided that such products are labelled, marked or accompanied with commercial documents in compliance with this Regulation.

규정에 따라 섬유제품은 라벨링, 마킹이 되어있거나 서류가 구비되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EU 시장에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 섬유 명칭 및 라벨링/마킹 요구 사항

- 라벨은 수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약칭(abbreviations)이 아닌 부속서 I (Annex I)에 열거된 명칭만을 사용해서 섬유의 조성 등을 표시합니다.
(wool, alpaca, cashmere, silk, cotton, nylon, polyester 등)
- 단일 섬유로 구성된 제품은 “100%”, “pure”, “a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섬유로 구성된 제품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각각의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에 대해 표시하여야 합니다.
- 눈에 잘 띄고 쉽게 떼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라벨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 특정 섬유제품(약 8종)은 부속서 IV에 따른 별도의 표시 방법을 따릅니다.
- 부속서 V (Annex V)에 나열된 제품은 섬유 명칭 및 조성 표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섬유제품의 라벨링 (부속서 IV)

- 1) 코르셋 제품(corsetry products) : 여성용 속옷, 거들, 코르셋은 구성 부분(측면, 컵 안쪽 부분 등)에 따른 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품 중량의 10%미만의 조성에 대해서는 비강제적입니다.
- 2) 에칭 프린트 직물(Etch-printed textiles) : 기본 섬유의 구성과 프린팅 된 부분의 구성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3) 자수 직물(Embroidered textiles) : 기본 섬유의 구성과 자수를 놓은 부분의 구성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4) 바닥을 덮는 카펫류(Floor coverings and carpets) : 카펫의 표면과 그 이면의 섬유가 다른 경우, 표면의 섬유에 한해서 표시합니다.

▶ ‘섬유’ 라벨링이 의무가 아닌 제품 (부속서 V)

- 시계 스트랩, 조화, 색칠된 캔버스, 핀 쿠션, 완구, 개인보호장비, 책커버, 동물용 의류, 깃발/배너 등

※출처

- 유럽위원회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textiles-ecosystem_en
- Europa.eu : revised FAQs on Regulation (EU) No 1007/2011 (2024-01-31)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document/download/34fcf863-59ef-4352-8489-a2577102fd8f_en?filename=revised%20FAQs%20on%20Regulation%201007-2011%20-%20published.pdf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문의처

상기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 및 최신 현지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품질인증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 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kbc/selectOvrskbcDetail.do?deptCd=9500>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프랑스 파리 무역관,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 등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KITA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EL : 1566-5114) <https://www.kita.net/expertHub/main.do>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5.03.3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i/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